

법무매거진

‘12년 소유권 논란’ 쫓겨 숨긴
훈민정음 상주본, 강제 회수 가능해졌다



<2017년 배씨기씨가 공개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일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상주본)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상주본의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56)씨가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기 때문이다. 상주본의 소유권이 문화재청에 있다는 사실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는 의미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를 11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법적으로 배씨가 상고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주본의 소유권이 배씨에게 있지 않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지난해 이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상주본의 소유권이 배씨에게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문화재청은 상주본을 회수하는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상주본의 위치를 아는 건 배씨뿐이다. 문화재청 입장에서 배씨의 입을 강제로 열 방법이 없어 상주본을 당장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북 상주시 낙동면
배익기 사무실〉

문화재청은 이날 배씨에게 상주본 반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17일에는 문화재청 관계자가 배씨를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선다. 강제집행에 곤장 나설 경우 배씨가 상주본을 훼손할 가능성 등을 우려해서다. 문화재청은 독촉 문서를 계속 보낸 이후에도 돌려받지 못할 시 배씨를 검찰에 문화재 은닉 및 훼손죄로 고발할 계획이다.

배씨는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문화재청에서 상주본이 최소 1조원의 가치를 가진다고 감정했다.”며 “그 10분의 1 정도인 1000억원을 사례금으로 달라고 제시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아도 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 법원의 판결문 등에 따르면 배씨는 골동품 가게에서 고서적 두 상자를 사면서 상주본도 함께 가져갔다. 당시 배씨가 낸 돈은 30만원이라고 한다.

상주본의 존재는 고서적 수집가인 배씨가 2008년 한 방송에 나와 자신이 상주본을 갖고 있다고 알리면서 처음 드러났다. 방송 이후 골동품 판매업자인 조모(2012년 사망)씨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기나긴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졌다.

2011년 5월 대법원은 배씨가 적법하게 상주본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주본의 소유권이 조씨에게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그러나 배씨는 조씨에게 상주본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문화재법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조씨는 배씨로부터 상주본을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한다는 서류를 남기고 사망했다. 정부가 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주장하고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이유다.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이

배씨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조씨의 사망에 따라 국가가 상주본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씨가 상주본의 소재를 밝히지 않으면서 문화재청은 상주본의 훼손과 분실 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2015년 3월 배씨의 집에 불이 나 상주본이 일부 훼손되기도 했다. 배씨는 화재 당시 집안으로 뛰어들어가 상주본을 꺼내왔고 이후 자신만 아는 곳에 보관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2017년 4월 상주본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상주본의 국가 소유가 확정된 건 긍정적이지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배씨가 소재를 알려주지 않으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최대한 안전하게 상주본을 돌려받기 위해 배씨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0년 넘게 관련 업무를 하면서 상주본의 상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2017년 4월 배씨에게 공문을 보내 상주본 인도를 요구하는 등 상주본을 받기 위해 계속 시도하고 있다. 당시 문화재청측은 공문에서 “소중한 문화재가 하루빨리 국가에 인도되길 바라고 있으며 인도될 때까지 이 문화재가 더는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관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출처/중앙일보)